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7.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90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3. 강남구청장(총무과)

나. 상정의결

-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1. 27.)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이호현)

가. 제안이유

-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4급 한시기구 신설과, 부서별 추진업무에 맞게 사무분장 내용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시기구 신설에 관한 내용 반영(안 제11조의2 신설)
- 부서별 추진업무에 맞게 사무분장 정비(안 제6조 ~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 (2023.10.13. ~ 10.23.)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남구 미래발전을 기획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 기구 설치와 현행 조례 내 각 부서들의 추진 업무 등의 조정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본 조례의 한시적 기구 설치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정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며(제1항), 이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제2항).
 - 이에 따라 그 기준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항).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하고(제3항),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것임(제4항)
 - 다만,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최장 6년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또한,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한시기구의 설치에 서울특별시와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임.
-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제1항),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 본 조례에는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그리고 행정국 등 각 국의 주요 업무와 국 소속 부서 명칭 등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과단위 부서별 사무분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어 본 조례안 의결 후, 해당 규칙도 조정 및 정비될 것으로 전망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자 재량사항을 제시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한시기구의 특성상 기존 부서들의 업무를 이동하고, 미래사업 중심으로 기존팀들을 이동시킨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다소 정밀하고 전략적으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마치 관련 업무 재구성 및 재배치로 보일 수 있는 약점이 있음.
- 또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구의회 차원에서는 본 조례안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에 미래전략기획단 담당 위원회를 어느 상임위원회로 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임.
- 그 소관을 행정재경위원회에 둔다고 하여도 신년도 업무보고 등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향후 구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행되고, 3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인데, 그 때 다시 또 구의회 (상임)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